

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칙

제	정	2014. 03. 20
개	정	2021. 01. 28
개	정	2022. 09. 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소재) 본 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라 하며, 아주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의산학교육원 산하에 설치하는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 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1.28., 2022.09.20.>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2.09.20.>

1. 산업계 및 재학생의 현장실습교육 참여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
2. 학사조직 연계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
3. 현장실습교육 운영기간 중 지도감독 지원 및 이수성과 관리
4. 현장실습교육 참여 재학생 및 실습기업 경비 및 행정 지원
5. 대학 전체 현장실습교육(표준 및 자율) 이수 통계 취합 및 지표관리
6. 기타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및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 전담조직으로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회
3. 사업수행 직원 약간 명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2.09.20.>

② 센터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직제운영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09.20.>

③ <삭제 2022.09.20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<개정 2022.09.20.>

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
2. 센터 수행사업 참가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운영사업 기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, 교비, 산학협력단 수익기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한다.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수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